

의안번호	2207818
의 퇴 인	김위상의원
회 답 일	2025.2.11.
추계번호	25B063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2조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 시설을 설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제1항) 1. 1일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2.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3.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측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제6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2조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안 제52조에 따라 농업용수의 계측시설 설치 대상자를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로 확대하고 환경부장관이 생활, 공업, 농업용수 계측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 계측시설 설치 비용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개정안은 농업용수의 계측시설 설치 대상자를 현행 1일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¹⁾에서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로 확대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생활, 공업, 농업용수 계측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개정안 시행 시 하천수 사용량 보고대상 시설은 2023년 12월말 기준 총 2,879개소이고 이 중 하천수 사용량 계측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 곳은 총 2,431개소(공업용수 119개소, 생활용수 81개소, 농업용수 2,231개소)임
 - 환경부 의견에 따르면,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계측을 위해서는 양수장에 계측기가 설치되어야 하고 농업용수 계측을 위해서는 양수장과 취입보²⁾ 두 시설을 구분하여 설치가 되어야 함
 - － 2023년 12월 말 기준, 농업용수 계측기가 미설치 된 양수장은 1,120개소, 취입보는 1,111개소임

1) 「하천법 시행령」

제60조(하천수 사용자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1일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2.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3. 1일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2) 취입보는 하천에서 농수로로 물이 공급되도록 하천 제방 등에 설치된 취수문을 열어 하천수가 하천 경사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구조물을 의미함

[표 1] 하천수 사용량 계측기 설치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측기 설치				계측기 미설치			
	공공 기관	지방자 치단체	기타	소계	공공 기관	지방자 치단체	기타	소계
공업	15	29	115	159	8	37	74	119
생활	12	72	3	87	10	70	1	81
농업	184	18	0	202	1,807	344	80	2,231
- 양수장	151	15	0	166	941	127	52	1,120
- 취입보	33	3	0	36	866	217	28	1,111
합계	211	119	118	448	1,825	451	155	2,431

자료 : 환경부 제출자료

- 안 제52조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하천수 사용량 계측시설의 설치단가 및 설치비용 지원의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계측시설의 설치단가는 계측방법에 따라 상이하여 현시점에서는 예측이 곤란하며 개정안에서 설치비용 지원 범위 및 수준 등 구체적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움

[표 2] 농업용수 시설형태별 계측기 설치 비용

(단위: 원)

구분	설치장비	설치비용
양수장	초음파관유량계 + 제어시스템	17,810,440
	실시간전력량계 + 제어시스템	14,377,000
취입보	전자파표면유속계 + 제어시스템	39,259,000
	전자파수위계 + 제어시스템	15,620,000

자료 : 환경부 제출자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